

제 560 호  
1976.6.2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   구 자 춘  
편 집 : 문화공보실장    조 용 하  
전 화 75-7834  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 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	
제 1047 호	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..... 3
제 1048 호	서울특별시행정서사정원 등에 관한조례..... 3
◎ 규 칙	
제 1591 호	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규칙 폐지규칙 ..... 7
제 1592 호	서울특별시분만개조비지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.....
제 1593 호	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..... 7
◎ 고 시	
제 132 호	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신설, 변경결정및 지적승인..... 8
(이면계속)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133 호	도시계획시설 ( 시장 ) 일부변경결정및 지적고시 .....	9
제 134 호	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일부변경결정및 지적승인 .....	9
제 135 호	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 및 지적승인 .....	10
제 136 호	도시계획시설 ( 종합의료시설 ) 결정 및 지적승인 .....	10
◎공 고		
제 137 호	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실시계획공람공고 .....	11
제 138 호	이수지구토지구획정리 조합정관 및 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서 공람 .....	17
◎사 령	.....	18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
1976년 6월 2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047 호
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  
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중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조 (명칭과위치) ① 복지관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서울특별시립중구부녀복지관
- 2. 서울특별시립종로부녀복지관

② 복지관의 위치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서사정원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
1976년 6월 2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048 호

서울특별시행정서사정원등에 관한조례 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행정서사법 (이하 "법"이라한다) 및 행정서사법시행령 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 의거 시장이 구청장 (출장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원제 실시) 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구, 출장소의 종류별정원은 "별표 1"과 같다.

제 3조 (허가) 구청장은 영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력증명사항을 서면으로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4조 (행정처분통지) 구청장이 법제

8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각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수당) 시험위원, 시험감독관 및 채점관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.

1. 시험위원 : 객관식 20 문 5,000원  
주관식 2 문 2,000원
2. 시험감독관 : 1 일 (공휴일에 한함)  
1,000 원
3. 시험채점관 :  
객관식 (응시자 1 인 1 과목당) 6 원  
주관식 ( " ) 40 원

제 6 조 (수수료등) ① 법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가 업무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"별표 2" 의 "행정서사업무수수료액기준표" 에

의한다.

② 행정서사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응시수수료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3 급이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응시 수수료에 준하여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징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업무처리인) 구청장은 법제 1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부기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"별표 3" 과 같은 고무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행정서사종류별정원표

구 별	합 계	정 원				비 고
		일반행정서사	해사행정서사	외국어번역행정서사	초과정원	
총 로	106	75	1	30		
총 구	90	59	1	30		
동대문	127	124	1	2		
성 동	97	94	1	2		
성 북	106	103	1	2		
도 봉	115	112	1	2		

구 별	합 계	정 원				비 고
		일반행정서사	해사행정서사	외국어번역 행정서사	초과정원	
서대문	76	73	1	2		
마포	64	61	1	2		
용산	104	73	1	30		
영등포	130	127	1	2		
관악	111	108	1	2		
강남	29	27	1	1		
은평	50	48	1	1		
천호	40	38	1	1		
양서	36	34	1	1		
합 계	1,281	1,156	15	110		

<별표 2>

행정서사업무수수료액기준표

행정서사 정원등에 관한 조례제 6조에 의하여 행정서사가 위촉받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.

1976년 6월 22일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사 건 증 별	단위	요 금	적 요	
문 안 불 요 서 류	양식화된 간단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출생신고 ○사망신고</li> <li>○혼인신고 ○분가신고</li> <li>○전적신고 ○인감신고등</li> </ul>	1매	100원 이내	○초과분은 1매당 40원
	사실증명또는 권리의무에 관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건축허가신청서</li> <li>○사실보유증명</li> <li>○실수요자증명</li> <li>○공장등록신고</li> <li>○재조사청구등</li> </ul>	1매	200	○초과분은 1매당 100원

구분	사	건 중 별	단위	요금	적 요
문 안 을 요 하 는 서 류	간단한서류	○각서 ○매도증서 ○유가증서 ○위임장등	1매	250 원이내	○초과분은 1매당 100 원
	복잡한서류	○건의서 ○진정서 ○소원서 ○탄원서 ○재심사청구서등	1건	500 원 - 1,500 원이내	○ 5매까지 1건 초과분과부분은 1매당 150 원
	특수한서류	○사업계획서등이첨부되 는 재허가신청서등  ○단체, 조합, 법인설립 서류및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서류	1건  1건	1,000 원 - 2,000 원이내  3,000 원 - 7,000 원이내	상 등  ○매수에 관계없이 완결된것을 1건 으로함
도 면	간단한도면	○영업장및주소지약도등	1매	250 원이내	
	상세한도면	○구조도, 구척도등	1매	300 원 - 1,000 원이내	

외국어  
선역 ○국, 한문작성 기준에 준하여 구분하고, 요금은 작성  
최하기준요금의 3 배이내로 함.

서류제출  
대행료 ○ 1건당 500 원이하로함.

○다만, 교통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그 실비를 가산할 수 있음.

- ※ 1. 용지의 규격은 18 절지를 원칙으로 하되, 규격이 정하여진  
서식은 그 규격에 의한다.  
2.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은 유사요금을 준용한다.

<별표 3 >

○ ○ 행정서사 ○ ○ ○ 사무소	위 촉 자
작성자 성명 인	인
수수로 } 작성료 원 } 대리제출료 원 } 계 원	

규 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1976년 6월 22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591 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1976년 6월 22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592 호

서울특별시분만개조비지급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분만개조비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의로기관은 보건소장이 의뢰한 임신부를 입원한 날로부터 3일간의 진료를 하고 진료상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신부가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4 조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보건소장이 제 3 항 단서규정에 의한 진료기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인근 시립병원에 입원 진료케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시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

1976년 6월 22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593 호

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24 조제 1 항중 “영제 103 조 내지 제 105 조”를 “영제 103 조제 3 항”으로 하고, 동조 제 2 항중 “영제 104 조제 2 호”를 “규칙제 55 조의 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대통령령제 7903 호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의 시행일로 부터 적용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32 호

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신설·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다음과 같이 신설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34 호(73.11.5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6. 17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신설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운동장	종로구구기동 151 외 2 필지	6,159㎡(1,863평)	신 설
"	용산구원효로4가 118-23 외 1필지	8,580㎡(2,600평)	폐 지

※ 도 면 생 략

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33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 일부  
변경결정 및 지적고시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 
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하였기 도  
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 
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(73.

4.4)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 
이를 고시한다.  
2.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 
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 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 
이게 한다.

1976. 6. 17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설변경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점	역촌시장	서대문구구산동 25 - 1	3,216 m <sup>2</sup>	시장예정지
변경	역촌시장	위 지번중 일부	338 m <sup>2</sup>	축 소

※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34 호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(도로)  
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공고제 117 호(73.6.18)  
로 사업준공된 일단의 주택지 조  
성사업 지구내의 소로 일부를 다  
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 
제 12 조, 동법제 13 조와 동법시행령

제 7 조의 2 및 대통령령제 7754 호  
(75.8.22)의 규정에 의거 이  
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 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 
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 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6.6.18

서울특별시장

가. 소로변경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변경전	소로	4류	4 m	35 m	중곡동산 3-56	중곡동산 3-56	위치
변경후	"	"	"	83 m	"	"	변경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</p> <p>도시 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 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</p>	<p>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 73.4.4 ) 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>1976. 6. 21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
<p>가.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</p>			
<p>시 설 명</p>	<p>위 치</p>	<p>면 적</p>	<p>비고</p>
<p>경 회 대 학 교</p>	<p>동대문구회기동산 4-1 의 73 필지</p>	<p>394,190 m<sup>2</sup> ( 119,242 평 )</p>	
<p>단 국 대 학 교 단국중·고등학교</p>	<p>용산구한남동산 8 의 3와 80 필지</p>	<p>140,100 m<sup>2</sup> ( 42,380 평 )</p>	
<p>승덕실업전수학교</p>	<p>서대문구불광동산 139-1 의</p>	<p>8,120 m<sup>2</sup> ( 2,456 평 )</p>	
<p>※ 도면표시와 같음. ( 도면생략 )</p>			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6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 종합의료 시설 )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 종합의 료시설 ) 은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 73.4.4 ) 의 규정</p>	<p>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>1976. 6. 21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

2/10

가. 도시계획시설 (종합의료시설)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			
시 설 명	위	치	면 적 비 고
종합의료시설	강남구 도곡동	145-45의 6 필	23,339㎡ (7,060평)

도면생략.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37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 ( 62.12.8 )

로 고시된 도선동-청계천간 도로

개설공사 공사간의 저촉되는 토지의
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

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

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

터 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

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

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6. 23

서울특별시장

<공람개요>

1. 사업장 위치 : 성동구 하왕십리  
동 일부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도선동~  
청계천간 도로개설공사

3. 사업의 규모: 가. B = 20 m  
나. L = 250 m
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  
76. 7. 15 ~ 77. 10. 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 
토지조서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 
지수용법 제 4조 제 3 항의 관계  
인 주소, 성명

순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 (수용대장)			소유자		관계인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	
1	하왕십리동				286-19	대	17	송인동 296	박향원	
2	"				286-18	"	11	하왕십리동 286-15	이병학	
3	"				286-14	"	6	" 286-14	원봉인	
4	"	286-13	대	3	286-123	"	2	" 286-15	고교풍태랑	
5	"	286-11	"	11	286-124	"	0.9	"	최용주	
6	"	286-10	"	10	286-125	"	2	" 286-10	서현동	
7	"				286-15	"	14	" 286-15	고교풍태랑	
8	"	286-9	대	17	286-126	"	7	" 286-8	정영배	
9	"				286-16	"	17	" 286-16	고교풍태랑	
10	"				286-17	"	23	"	"	
11	"				286-20	"	14	"	"	
12	"	286-22	대	23	286-130	"	17	" 230-2	김순복	
13	"				286-23	"	5	" 286-23	고교풍태랑	
14	"				286-24	"	19	"	"	
15	"	286-25	대	12	286-127	"	9	" 903	한백용	
16	"	286-26	"	16	286-128	"	0.8	" 286-26	이광석	
17	"	286-27	"	22	286-129	"	21	" 286-23	고교풍태랑	
18	"				286-28	"	28	" 286-28	강춘철	
19	"				286-29	"	31	" 286-29	고교풍태랑	
20	"	286-30	대	15	286-131	"	10	" 286-30	배금산	
21	"	286-39	"	16	286-132	"	2	" 286-29	임병욱	
22	"				286-40	"	10	" 286-40		
23	"				286-41	"	20	" 286-43	서진석	

순위	소재지	분할후표시			분할후표시 (수용대상)			소유자		관계인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	
24	하왕십리				286-42	대	13	하왕십리동 286-42	김종국	
25	"	286-43	대	21	286-134	대	20.1	" 286-43	서진석	
26	"	286-44	대	16	286-133	대	8	" 286-45	서진석	
27	"	282-2	대	383	282-4	대	128	신당동 80-61	정홍성	
28	"				284-5	대	43	당현동 279	최화진	
29	"				284-8	대	63	"	"	
30	"				284-6	대	43	" 259-6	최유진	
31	"				284-7	대	43	"	최문진	
32	"				260-2	대	26	하왕십리동 260-2	단양순	
33	"				259-12	대	42	" 259-9	최순진	
34	"				259-13	대	42	" 260-3	최강진	
35	"	260-3	대	32	260-8	대	21	행당동 309	김계수	
36	"	260-5	대	25	260-9	대	0.4	충무로 5가 20-20	박철훈	
37	"				260-4	대	17	하왕십리동 260-4	김삼득	
38	"				259-14	대	21	중곡동 29-37	최인숙	
39	"				259-15	대	11	당현동 279	최정숙	
40	"				242-170	대	14		고교풍태랑	
41	"	242-169	대	13	242-218	대	0.4	하왕십리 242-169	손귀선	
42	"				242-171	대	15	"	고교풍태랑	
43	"	242-168	대	20	242-219	대	3	하왕십리 242-57	판곡영차	
44	"				242-172	대	15	당현동 279	최정숙	
45	"	242-167	대	16	242-220	대	5	하왕십리동 242-167	김교성	
46	"	266-1	대	37	266-4	대	15	하왕십리동 476	최사늑	

순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 (수용대장)			소유자		관계인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	
47	하왕십리동	265-1	전	138	265-2	전	60	하왕십리동 476	최사늑	
48	"				242-173	대	23	" 173	김영일	
49	"				242-174	대	26	하왕십리 242-42	김은동	
50	"	242-166	대	20	242-221	"	4	"	고교풍대량	
51	"	242-165	"	13	242-222	"	5	"	"	
52	"	242-175	"	11	242-223	"	9	"	엄규영	
53	"				242-182	"	13	하왕십리 242-182	송종화	
54	"				242-183	"	16	" 242-183	김호영	
55	"				242-205	"	2	"	고교풍대량	
56	"	242-189	대	22	242-228	"	2	" 242-189	곽대현	
57	"				242-184	"	19	"	고교풍대량	
58	"				242-181	"	17	" 241-181	최증숙	
59	"				242-176	"	10	" 242-176	서순철	
60	"	242-164	대	17	242-224	"	7	"	박우익	
61	"	242-188	대	13	242-227	"	3	" 242-188	김증명	
62	"	242-187	대	18	242-226	"	9	" 242-187	이응수	
63	"				242-185	"	25	" 242-185	백우빈	
64	"				242-186	"	20	하왕십리 242-186	김정봉	
65	"				242-180	"	8	"	고교풍대량	
66	"				242-179	"	19	"	"	
67	"				242-178	"	14	"	곽기물	
68	"	242-177	대	21	242-225	"	17	"	황장택	

## 공사건물가격조서

번호	소재지	구조	수용 면적	사정		소유자	
				단가	금액	주소	성명
1	하왕십리242-187	목조 초층	8			하왕십리242-187	강명산
2	" -186	" 도단	1.34			" -186	김정봉
3	" -188	" 초층	9.50			" -24	임원재
4	" -185	" 초층	7			" -185	백우민
5	" -178	" "	8			" -178	임규성
6	" -180	" "	8			" -180	조병덕
7	" -179	" "	8			" -179	능천심수
8	" -177	" "	6			" -177	박평길
9	" -189	" "	13			" -189	곽대현
10	" -184	" "	8			" -184	금본인구
11	" -183	" "	6			" -183	김호영
12	" -181	" "	6			" -181	이길순
13	" -182	목조세멘와즙	10			" -182	박덕우
14	" -176	세멘부릭스퀘트	10			" -176	서순철
15	" -164	목조 도단	8			" -164	이봉조
16	" -175	" 세멘와즙	11			" -175	엄규영
17	" -174	" "	7			" -42	김은동
18	" -165	" 초층	6			" -165	서정택
19	" -166	" "	9			" -37	최춘만
20	" -173	" 세멘와즙	7			" -173	김영일
21	" 265- 2	판자 루핑	10			" 476	최사늑
22	" 266- 4	" 스테트천막	26			" 476	"

번호	소재지	구조	수용면적	사정		소유자	
				단가	금액	주소	성명
23	하왕십리 260-	4 목조, 외증	8			하왕십리 260-	4 이천재
24	" - 3	" "	13			" - 3	이계수
25	" - 2	" 초증	11			" - 2	단양순
26	" 242-172	" "	7			" 286-	3 신순동
27	" -J71	" "	6			" 242-	44 최덕기
28	" -170	" "	7			" 286-	1 양소무용
29	" -169	" "	6			" 242-	169 이용빈
30	" -168	" "	7			" - 57	유복만
31	" -167	" "	7			" -167	이경우
32	" 286- 43	" 세 외 증	9.11			" 286-	41 서진석
33	" - 42	세부력 "	8.69			" - 42	김종숙
34	" - 44	목조 "	10			" - 45	서진석
35	" - 41	" "	15			" - 43	"
36	" - 39	" "	9			" - 39	엄경옥
37	" - 27	세면부력스레트	16			" - 27	박성길
38	" - 26	목조 초증	9.3			" - 26	김한숙
39	" - 25	" 세면외증	7			" - 25	한백용
40	" - 28	" "	9			" - 28	강춘철
41	" - 29	" "	17			" 286-	29 이유감
42	" - 24	세면부력 세면외증	15			" - 24	서장길
43	" - 23	세면부력무핑	5			" - 23	정영득
44	" - 30	" 세외증	5.33			" 286-	30 배금산
45	" - 22	목조, 세면외증	7.82			" 230-	22 정영일
46	" - 20	세면부력 "	3.54			" - 20	김유동
47	" - 17	" 유지증 흙벽돌 "	7.17 7.51			" - 17	김춘환



번호	소재지	구 조	수용면적	사 정		소 유 자	
				단가	금액	주 소	성 명
48	하왕십리 286-16	목조, 세면외증	9.5			하왕십리 -16	노종욱
49	" - 9	세면, 세면외증	8.02			" - 9	정차복
50	" -15	" 루핑	8			" -15	최정자
51	" -10	" 세면외증	6.72			" -10	이윤성
52	" -11	" "	6.25			" -12	이배욱
53	" -13	목조 "	6.99			" -12	이배욱
54	" -14	세면외증	9.16			" -14	원봉인
55	" -18	" 초증	6			" -18	이병학
56	" -19	목조세면외증	12			송인동 297	김용자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38 호

이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공람

1.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함을 알려 드리며

2.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이수 구획정리 조합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,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.

공 랑 내 용

- 가. 조합정관일부변경
- 나. 사업지 추가편입
  - 위치 : 관악구 방배동, 사당동, 강남구 서초동 각 일부

<p>○ 면적 : 34,000평 추가 다. 사업지 추가편입에 따른 기존 지구내 일부 도로 변경 1976. 6. 22. 서울특별시 장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사 령</p> </div> <p>◎1976.6.17</p> <p>용 산 구 지방토목 김봉식 기 관 원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6.2.3. (발령제 52호) 감봉 6월처분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1월 에 처함.</p>	<p>중 부 병 원 지방보건 박석재 기 관 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</p> <p>시립아동병원 지방약무 윤준식 기 관 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</p> <p>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이 민 우 주 관 사 통계담당관 지방행정 윤근현 주 관 사 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 <p>◎ 1976.6.18</p> <p>시 민 과 지방통신 김옥량 원 관 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
--	--

성 명	발 명 사 항
장 정 자	강남구보건소 초 임 호 봉 지방간호기원보시보
이 소 회	서대문병원 " "
이 연 화	" " " "
김 정 화	강남구보건소 " " " "
김 삼 덕	영등포병원 " " " "
박 귀 남	아 동 병 원 " " " "
박 학 례	남 부 병 원 " " " "
김 세 경	아 동 병 원 " " " "

21  
1870

성 명	발 령 사 항
조 행 순	영등포구보건소 초 임 호 봉 지방간호기원보시보
이 은 래	정 신 병 원 " "
고 순 애	아 동 병 원 " "
전 원 귀	남 부 병 원 " "
김 경 회	" " " "
조 영 회	아 동 병 원 " "
이 정 회	중 부 병 원 " "
김 안 자	아 동 병 원 " "
신 숙 회	" " " "
윤 숙 경	서 대 문 병 원 " "
도 순 자	남 부 병 원 " "
안 영 애	서 대 문 병 원 " "
김 재 란	영 등 포 병 원 " "
정 재 도	서 대 문 병 원 " "
계 순 욱	" " " "
조 재 범	주 택 관 리 과 " 지방토목기원보시보
석 순 동	도 로 보 수 과 " "
이 용 운	성 부 구 " "
주 원 국	영 등 포 구 " "
신 문 현	중 로 구 " "
하 진 수	성 동 구 " "
모 완 수	토 목 시 험 소 " "
정 성 원	관 ( 도시 계획 과 파견 76.6.21 - 76.9.21 ) " "
박 경 기	관 약 구 " "
조 병 준	성 동 구 " "

성명	발령사항
최현태	서대문구 초임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
신규식	영등포구 " "
최완용	서대문구 " "
강승호	토목시험소 " "
김용구	은평출장소 (도시계획과파견 76.6.21 - 76.9.21) " "
구현모	영등포구 " "
나태산	마포구 " "
김훈식	" " " "
이종철	도시가스사업소 " "
이운섭	대현산배수지 " "
김항오	성북구 2호봉 " "
조한충	양서출장소 초임호봉 " "
이자화	노량진수원지 " "
이회영	마포구 " "
이종완	구의수원지 " "
공성창	동대문구 " "
길병연	서대문구 " "
김영수	도봉구 " "
정종곤	성동구 " "
이상섭	대현산배수지 (도시계획과파견 76.6.21 - 76.9.21) " "
이동주	동부건설사업소 " "
조홍기	노량진수원지 " "
최영재	도봉구 " "
김택	용산구 " "
이효형	수도관리사업소 (도시계획과파견 76.6.21 - 76.9.21) " "
박노준	서대문구 " "

성명	발령사항	초임호봉	지방토목기원보시보
노우성	관악구	초임호봉	지방토목기원보시보
김현교	종합종말처리사업소	"	"
하용성	서대문구	"	"
임상욱	동대문구	"	"
신영호	은평출장소	"	"
송철규	공업과	"	지방기계기원보시보
권정근	도시가스사업소	"	"
이국한	노량진수원지	"	"
권성수	천호출장소	"	"
유재양	용산구	"	"
이재호	도봉구	"	"
김당수	수도관리사업소	2호봉	"
이영목	연료과	초임호봉	지방전기기원보시보
나용제	성동구	"	"
신이철	용산구	"	"
이대환	노량진수원지	"	지방화공기원보시보
정원진	은평출장소	"	지방농림기원보시보
원희진	양서출장소	"	"
권희진	은평출장소	"	"
권희종	강남구	"	"
권진완	영등포구	"	"
이서구	도봉구	"	"
조형성	관악구	"	지방지적기원보시보
유재규	관악구	"	지방전기기원보시보
유재규	관악구	"	"
유재규	산.업.대.학	"	지방사세보시보
유재규	축산물검사소	"	지방수의원시보

서울특별시장